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11월 9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11. 27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구 조례중 옥외광고물 등 신고·허가 수수료 [별표3] 기준중 일부를 개정, 타 구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행화하여 세수 확보를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전자게시대 수수료 인상 (6천원 → 1만원)
-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(백열등·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) 수수료 신설(1.5배 적용)
- 입간판 수수료 신설(4천원)

- 「비고」 부분에 변경과 연장 등 2건이상 동시 신청시 해당 수수료 중 더 중한 1건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 신설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- 본 개정조례안은
  - 우리구 조례중 옥외광고물 등 신고·허가 수수료 [별표3] 기준중 일부를 개정, 타 구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행화하여 세수 확보를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검토 결과
  - 서울시 타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 및 신설하여 세수 확보를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, 광고물의 정비·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.

발 의 자: 유승용, 임현호, 이순우  
우경란 의원(4인)

## 1. 제안이유

우리구 조례중 옥외광고물 등 신고·허가 수수료 [별표3] 기준중 일부를 개정, 타 구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행화하여 세수 확보를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전자게시대 수수료 인상 (6천원 → 1만원)

나.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(백열등·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) 수수료 신설(1.5배 적용)

다. 입간판 수수료 신설(4천원)

라. 「비고」 부분에 변경과 연장 등 2건이상 동시 신청시 해당 수수료 중 더 중한 1건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 신설

## 3. 개정안: “별첨”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11. 9.~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 
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너목 “수수료” 란 중 “6,000원”을 “10,000원”으로 한다.

별표 3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p>더.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백열등 · 형광등 또는 LED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</li> <li>- 네온류 · 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(전자게시대는 제외함)</li> </ul>	<p>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1.5배적용</p> <p>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적용</p>
---	---

별표 3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러. 입간판(1건)	4,000원
------------	--------

별표 3 비고 제1호 중 “광고내용 만”을 “광고내용만”으로 하고, 비고 제3호  
중 “1원단위”를 “1원 단위”로 하며,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하나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 
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을  
징수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	개정안	
[별표3] 너. 전자게시대 (1건)	<u>6,000원</u>	[별표3] 너. 전자게시대 (1건)	<u>10,000원</u>
[별표3] 더. 광고물 등에 네온류·전광류 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의 경우(단 순조명 및 광 원이 직접 노 출하지 않는 네온류·전광 류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제외하나, 이 경우에도 빛 이 점멸하거 나 동영상 변 화가 있는 경 우에는 포함)	<u>해당 종류의 광 고물 수수료 의 2배적용</u>	<u>더. 전기를 이용 하는 광고물</u> - <u>백열등·형 광등 또는 LE D 등 내부조 명 또는 단순 조명</u> - <u>네온류·전 광류 또는 디 지털광고물</u> (전자게시 대는 제외함)	<u>해당 종류의 광 고물 수수료 의 1.5배를 적용</u> <u>해당 종류의 광 고물 수수료 의 2배를 적 용</u>
<신 설>		<u>러. 입간판(1건)</u>	<u>4,000원</u>

[별표3]

비고: 수수료의 징수방법

1. 영 제9조제1항 관련,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 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·사용자재·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.

[별표3]

비고: 수수료의 징수방법

3. 수수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.

<신 설>

[별표3]

비고: 수수료의 징수방법

1. 영 제9조제1항 관련,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 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·사용자재·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.

[별표3]

비고: 수수료의 징수방법

3. 수수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.

[별표3]

비고: 수수료의 징수방법

4. 하나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.